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27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 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

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정의) ○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특이사항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4. 생략

② 생략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 제3항 기본계획 수립위한 실태조사, 제6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8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비용 발생 가능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2018~2022)
-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점인 5년마다 1회 실시
-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은 추정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은 1개소 설치로 가정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1,130백만원
- 상세내역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 30백만원(5년, 1회)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70백만원(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 20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20백만원· 장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 30백만원 |
|---|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운영 : 150백만원(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7년 예산서· 인건비(3명×3,600천원×12월) _급여,수당,보험,퇴직금 등 : 130백만원· 운영비 : 20백만원(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
|--|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실태조사	30,000	-	-	-	-	30,000
	활동지원사업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지원센터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	25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3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5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30,000
	일반회계	25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3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